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남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가 천안시와 아산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음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이나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63번지를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안 제1조)
- 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2번지, 2183번지를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안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제1조(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63번지를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2번지, 2183번지를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치분권지원과	
연 락 처	044-205-3332